

의정활동보고서

제204회 임시회(2006. 2. 15 ~ 2. 24)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06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첫 의정을 여는
제20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5일에 열린 신년 교례회에 이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
니다.

올 한해도 건강과 기쁨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도는 지역발전의 역량을 안정된 가운데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경북을 사랑하고 아끼는 「300만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희망찬 기대로 시작하는 2006년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 됩니다.

특히 외국산 쌀 시장의 개방과 ‘제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맞물린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그리고 지방의원의 유급화 등 도정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은 당면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충격 극복과 쌀 시장 완전 개방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도정주요 시책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는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이

느끼고 한층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는 300만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생산적인 의정이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
대하며,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300만 도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15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哲 雨

차 례

I. 개 황

II. 의사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상임위원회

III.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상임위원회

IV.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2. 조례 공포사항

VI. 기타사항

VII. 5분 자유발언

부 록

□ 조례안

1.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9. 지방공사 경상북도의료원 설립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동의안

1. (재)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건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04회 임시회는 2006년 2월 15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2월 24일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9회 상임 및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2월 15일(수)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현준·장대진·김석호 의원)을 청취한 후 제2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의결하고 산회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2월 15일부터 동월 24일까지 10일간 조례안·동의안 등 심사와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2월 24일(금)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김준호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에 대해 의결하고, 경상북도의회 제204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6-1호(2006년 2월 2일, 목)

라. 집회일시 : 2006년 2월 15일(수)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6년 2월 15일 ~ 2월 24일 (10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 (누계 86회)

○ 상임위 회의 : 11회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6. 2. 15(수) 11:00 (제1차)	1. 5분 자유발언 ○ 이현준 의원 (예천군, 건설소방) ○ 장대진 의원 (안동시, 행정사회) ○ 김석호 의원 (구미시, 행정사회)	

나.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6. 2. 15(수) 10:00(제1차)	○ 의회사무처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 제20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원안가결

<기획과학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6. 2. 15(수) 13:30(제1차)	○ 2006년도 업무보고 -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2006. 2. 16(목) 11:00(제2차)	○ 2006년도 업무보고 - 과학정보산업국,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6. 2. 21(화) 11:00(제1차)	○ 2006년도 업무보고 - 경도대학, 자치행정국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개의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6. 2. 22(수) 11:00(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연수원, 보건복지여성국 ○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 설립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6. 2. 16(목) 10:30(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산림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청 	
2006. 2. 24(금) 10:00(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농정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6. 2. 16(목) 11:00(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문화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6. 2. 15(수) 13:00(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통상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6. 2. 15(수) 13:00(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도시재난국, 소방본부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10 (389)	12 (384)	11 (340)	1 (42)	(2)	(2)	(3)	
조 례 안	소 계	9 (187)	11 (185)	10 (161)	1 (23)	(1)	(2)	
	의회 제안	(19)	(19)	(8)	(10)	(1)		
	도지사 제출	7 (136)	7 (134)	7 (124)	(10)		(2)	
	교육감 제출	2 (32)	4 (32)	3 (29)	1 (3)			
예산·결산	(34)	(33)	(18)	(15)		(1)		
동의·승인	1 (102)	1 (102)	1 (101)	(1)				
건의안	(13)	(12)	(11)	(1)			(1)	
결의안	(16)	(16)	(15)	(1)				
기타안	(37)	(36)	(34)	(1)	(1)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부결 안건 현황 : 2건>

- ①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박승학의원외 14인 발의, 2003. 9. 2, 본회의)
- ② 경북·대구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정기의원외 16인 발의, 2004. 9. 1, 의회운영위원회)

<철회 안건 현황 : 2건>

- 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철회안
(김정기의원외 32인 발의, 2004. 7. 2, 본회의)
- ②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박영화의원외 20인 발의, 2005. 6. 9, 본회의)

<계류 중인 안건 현황 : 5건>

- ① 경상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2. 10. 15, 행정사회위원회)
- ②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3. 9. 8, 기획위원회)
- ③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4. 7. 1, 미상정)
- ④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4. 7. 1, 미상정)
- ⑤ 쌀값 하락 관련 대책 촉구 건의안
(정상진의원외 16인 제출, 2005. 12. 16, 미상정)

2. 상임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11 (392)	12 (385)	11 (187)	(33)	1 (102)	(13)	(16)	(34)	(2)	(2)	1 (3)
의 회 운 영	(16)	(15)	(7)				(5)	(3)	(1)		
기 획 과 학	(29)	(28)	(17)		(7)	(2)	(1)	(1)			(1)
행 정 사 회	8 (116)	8 (115)	7 (79)		1 (33)	(1)	(2)				(1)
교 육 환 경	2 (54)	2 (54)	2 (39)		(13)	(1)		(1)			
농 정	(23)	(23)	(7)		(13)	(3)					
경 제 문 화	(51)	(51)	(20)		(27)	(2)	(2)				
건 설 소 방	(23)	(23)	(12)		(8)	(2)		(1)			
특 별	(35)	(35)		(33)			(1)	(1)			
본회의	1 (45)	2 (41)	2 (6)		(1)	(2)	(5)	(27)	(1)	(2)	1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 어업	기 타
계	3 (150)	(15)	1 (24)	1 (13)	(33)	(9)	(9)	(14)	(12)	1 (21)
의 회 운 영										
기 획 과 학	(14)		(1)		(9)		(2)			(2)
행 정 사 회	(28)	(10)	(8)	(1)	(2)					(7)
교 육 환 경	(26)			(1)		(9)		(13)	(2)	(1)
농 정	(9)			(1)	(1)				(7)	
경 제 문 화	2 (33)	(2)	1 (14)	(4)			(7)			1 (6)
건 설 소 방	1 (37)	(3)	(1)	1 (6)	(21)			(1)	(3)	(2)
특 별 위 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45)	(145)				3 (5)
의회운영						
기획과학	(14)	(14)				
행정사회	(28)	(28)				
교육환경	(26)	(26)				
농 정	(9)	(9)				
경제문화	(29)	(29)				2 (4)
건설소방	(36)	(36)				1 (1)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6. 2. 6)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6. 2. 8)
경상북도지사 (2006. 2. 6)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2006. 2. 6)	지방공사 경상북도의료원설립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2006. 2. 6)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설립에 관한 건	“
경상북도지사 (2006. 2. 6)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6.2.13)
경상북도지사 (2006. 2. 6)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행정사회 (2006.2.13)
경상북도지사 (2006. 2. 8)	경상북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6. 2. 8)
경상북도지사 (2006. 2. 8)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행정사회 (2006. 2. 8)
경상북도교육감 (2006. 2. 8)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6. 2. 8)
경상북도교육감 (2006. 2. 10)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6. 2. 13)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5. 12. 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5. 12. 26 (제2893호)
2005. 12. 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5. 12. 26 (제2894호)
2005. 12. 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5. 12. 29 (제2895호)
2005. 12. 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5. 12. 29 (제2896호)
2005. 12. 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2005. 12. 29 (제2897호)
2005. 12. 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2005. 12. 29 (제2898호)
2005. 12. 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2005. 12. 29 (제2899호)
2005. 12. 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학교급식 식재료의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1. 5 (제2900호)
2005. 12. 2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1. 12 (제2901호)
2005. 12. 2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06 1. 12 (제2902호)

VI. 기타사항

○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 일 시 : 2005. 12. 28(수) 07:30
- 장 소 : 그랜드 호텔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 일 시 : 2005. 12. 28(수) 12: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철우 의장

○ 경상북도 유도회(儒道會)회장 접견

- 일 시 : 2005. 12. 28(수) 14: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철우 의장

○ 2005년 제야의 종 타종

- 일 시 : 2005. 12. 31(토) 24:00
- 장 소 : 영덕 삼사해상공원
- 참 석 : 이철우 의장, 손규삼 부의장

○ 2006년도 매일신문사주최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6. 1. 2(월) 12:00
- 장 소 : 인터블고호텔
- 참 석 : 이철우 의장

○ 경북도의회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6. 1. 5(목) 11: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도의원

○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돕기 성금 모금

- 일 시 : 2006. 1. 11(수) 11:00
- 장 소 : 대구MBC방송국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제9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

- 일 시 : 2006. 1. 18(수) 10:3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채희영 경제문화위원장(축사)

○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 일 시 : 2006. 1. 19(목)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06. 1. 23 ~ 1. 27
- 장 소 : 도내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30개시설
- 참 석 : 해당지역 출신 도의원

○ 대구·경북지역발전 협의회

- 일 시 : 2006. 1. 25(수) 07:30
- 장 소 : 그랜드 호텔
- 참 석 : 이철우 의장

○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식

- 일 시 : 2006. 1. 25(수) 14:00
- 장 소 : 청도휴게소
- 참 석 : 이철우 의장, 양재경 의원

VII. 5분 자유발언

□ 2006년 2월 15일(수) 제20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현준의원 ◎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천 출신 이현준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 「경북 혁신도시」가 김천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유치에 탈락한 시군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 산하기관을 그 기능과 특성, 지역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혁신도시 유치에 실패한 시군으로 적정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구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도 산하기관은 공무원교육원을 포함하여 7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작년 12월13일 혁신도시 선정 탈락지역 지원 방안으로써 “대구 소재 도 산하 7개 기관을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방침이며, 입지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올 상반기 중에 이전 예정지를 확정하겠다” 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공공기관 이전은 여러 의원님과 시군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각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43개의 도 산하 기관은 안동에 8개가 있으며 군위, 청송 등에는 1개의 기관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전될 7개 기관은 각 시·군별 안배 차원도 물론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만, 이전시 경제적 측면과 타 기관과의 연계성, 향후 발전여건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영양군의 인구가 2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고는 다른 지역 역시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농촌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북북부지역의 황폐화를 막고, 도가 설립한 경도대학이 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공무원교육원을 고속도로와 접해 있어 도내 어디서에서든 교통 접근성도 뛰어난 경도대학 내, 혹은 그 부근에 이전하여 교육시설의 집적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교육관련 두 기관을 연계시킴으로만이 교육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이전경비와, 인적 교류를 통한 운영경비의 절감은 물론, 경도대학 재학생 교육과 도 공무원, 그리고 경북도민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도대학의 도서관, 컴퓨터실, 운동장, 체육관, 방학 중 기숙사 시설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이전 경비와 운영 경비의 절감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경도대학은, 공무원 양성대학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바, 교육원의 우수한 실무 중심 강사를 활용한다면, 경도대학 학생의 실무 능력이 강화되고, 경도대학 교수의 공무원교육원 강의를 통해 안정적인 외래 교수요원의 확보와 수업 운영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대학의 발전은 물론 공무원교육원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윈-윈 전략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역사적으로 안동 도산서원과 영주 소수서원 등 영남지역 교육의 메카라 할 수 있으며, 주변의 풍부한 관광자원은 시설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신세대 공무원의 교육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지역간의 균형발전 논리를 적용하더라도, 특히 경도대학과 공무원 교육원간의 상생을 생각할 때도, 두 기관의 연계만이 미래 생존 전략의 유일한 대안이자 최선의 방법이라 확신하면서, 공무원 교육원을 경도대학내로 이전하여 경북 북부권 발전의 핵으로 그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도지사의 현명한 정책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대진의원 ◎

본의원은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나 지역이기의 논리가 아닌 대구·경북 전체의 미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차원에서 경북도청이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남도청은 무안으로, 홍성과 예산이 충남도청 이전지로 확정 발표되었지만 경북도청 이전지는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경북만이 도청소재지를 추진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가 되었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명분이 있었는데도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경북도청이전 문제는 경북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지난 ’92년4월 결의안 발의로 본격적 추진이 되었지만, 그간 정치논리에 근거한 세력싸움, 선거를 의식한 표의 논리에 잠식되어 경북의 공동발전이라는 대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북북부지역의 낙후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경북의 삼각축, 다시 말해서 동남권, 중서부권, 북부권, 삼각축 발전과 균형개발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북의 균형발전과 경북의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의 도청이전문제가 일부 세력의 개인 영달과 일신의 이익에 희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듯 지난 1999년12월27일 도청소재지선정추진위원회조례안이 유보되고, 그 과정 속에 이의근 지사를 비롯한 일부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처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단 한번이라도 진실로 표와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지?

얼마 전 본의원은 지사님께서 모 방송에 출연, 경북도청은 경북북부지역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임기 말이니 만큼, 여러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경북의 미래를 내다보며 솔직하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 지사의 진정성이 담긴 이 발언마저 각계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구구한 억측과 해괴한 논리를 낳고 있습니다. 지사의 발언 이후에 제일 먼저 불거진 것이 대구·경북의 경제통합 논의입니다.

실체가 없는 이 논의는 결국 대구로의 행정통합을 염두에 둔 애드벌룬 띄우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구·경북은 한번도 경제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경제통합 논의가 일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분분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녕 지사의 진정어린 고민의 결론이 북부지역으로의 도청이전이라면 이제는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순차적이고도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당장 분란이 적은 경북농업기술원,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등 대구소재 7개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서라도 먼저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지사의 임기 내에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이 반복되어 온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북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의근 지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지역혁신협의회가 도청을 경북으로의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 등 경북북부지역간 지역이기주의는 어느 정도 극복된 지금, 차기 지사후보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는 이 시점이 경북도청이전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도민이 부여해준 소임을 완수한다는 큰 각오로 지사의 마지막 사명감을 볼 수 있기를 본의원은 간곡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석호의원 ◎

죽어가는 재래시장,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의 생존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출신 김석호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민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민 유통을 책임지던 우리 이웃 재래시장 상인들의 태반이 하루 만원 벌이도 하지 못하고 있고, 자립은커녕 자녀교육 등 최소한의 기본생활마저 마비되어 한숨과 한탄으로 이 모진 세월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재래시장 상인의 절박한 심정으로 경상북도의회의 특단의 예산지원과 시설투자가 대대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5분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세밑, 본의원은 구미에 위치한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평소 장사가 잘 안 되어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인데 경기가 좀 풀렸거니 하면서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새해인사도 드릴 겸 재래시장을 방문하였으나 어처구니없는 광경 앞에 본의원은 걸음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그 많은 2,000여개가 넘는 상점에 손님이라고는 본의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정말 막막하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도, 위로의 말도 어떤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주시하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인구 38만의 구미에 3개의 골리앗 할인점이 무한경쟁에 돌입하여 서민층의 유통을 담당하고, 지역의 문화를 전과하던 우리 마음의 고향 재래시장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다.

재래시장 40%이상의 상인들이 여력만 있으면 전업을 하고 싶어 하고 구미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2004년3월 제187회 임시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강력히 경상북도에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시장 환경 및 시설 개선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 지원정책이 실행이 된 후 그 실효성에 대한 효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당시 본의원은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재래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조합을 결성하도록 지원하여 대형 유통자본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활성화의 한 방안이라고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나 일선 시·군에 재래시장 활성화 전담팀을 구성하여 재래시장과 각 지역의 문화 및 관광행사 등을 연계하여 역동성 넘치는 재래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재래시장을 지리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특화시장, 전문시장, 향토시장, 틈새시장, 품물시장 등으로 세분화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의 차별화를 시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영주출신 장찬식의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배·동료의원님께서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즐기차게 활성화대책을 주장하였습니다만 수년이 지나도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채 임시방편만이 강구되는 사이 우리 이웃인 재래시장 상인들이 경제적 파탄으로 내몰리고 재래시장은 하나 둘 죽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래시장 문제는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우리 이웃인 서민의 문제입니다. 먹고사는 생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폴리앗 할인점으로 전국의 재래시장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두 손 놓고 주저앉아 있는 상인들을 대하면 본의원의 가슴은 절망으로 무너집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나서야 합니다. 재래시장은 단순히 물건의 거래 장소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추억과 애환과 삶이 녹아있는, 우리 정신이 살아 숨쉬는 전통의 문화현장이며, 상인들의 생계수단이자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마케팅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설비투자에서 벗어나 전략적 지원, 재래시장의 블루오션을 주도할 마케팅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일례로 재래시장인 서울 남대문시장의 의류매장 메사는 총연장 60m인 샷이 이펙트라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고객의 이목을 집중시켜 잃어버린 상권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온라인마케팅의 승리입니다. 재래시장의 블루오션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강력한 전담마케팅 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올립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전문마케팅팀을 초빙하여 특정재래시장의 오직 이곳 뿐인 리모델링을 통해 활성화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온라인마케팅을 재래시장에도 적극 도입할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앞장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지원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6년 2월 24일(금) 제20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준호의원 ◎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김준호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의 저서 “역사의 한 연구”라는 책자의 첫머리에 “지구도 돌고 있지만 우리 역사 문명의 축도 돌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명의 축은 서쪽으로 향해서 우리 인류 역사가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 인도를 비롯한 고대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처음으로 개화한 곳은 그리이스다. 그리이스 고대국가에서 아테네를 비롯한 찬란한 헬레니즘의 꽃을 피우고 그 다음은 지중해를 건너... “모든 길은 로마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서 그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산업혁명과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영국으로 ”대영제국 5대양 6대주에 영국기가 휘날린다.“라고 하는 빅토리아 왕조의 전성기인 영국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는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대서양을 건너 세계의 힘은 미국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미국도 대서양 연안국가로서 미국의 역할은 끝나고 태평양 국가로서의 미국과 중국, 일본, 여기에 우리 역사의 힘이 걸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 교수의 역사의 순환 원리를 도입하면 우리 한민족도 이제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 또 발해의 광활한 영토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중국과의 생존경쟁을 위해서는 인구를 많이 증가해야 된다, 과거 만주벌판에... 잘 아시다시피 거란이라든지 여진이라든지 무수한 만주족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버리고 우리 한민족만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이라는 한민족과 피나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구가 적어도 일본 수준은 능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젠가는 한 세대가 지나면 통일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쪽으로 결국은 통일이 되어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남한 인구가 북한을 압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반도국가입니다. 반도국가가 남으로 내려가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대륙을 향해서 우리의 머리를 대륙으로 돌릴 때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가 담보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히 역사적인 고찰로 우리 한민족의 인구가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현실적으로 요즘 한창 대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자녀수에 대한 부담이 강조되고,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의 성과 덕분에 출산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어 합계 출산율이 미국 2.01명, 뉴질랜드 1.9명, 일본 1.32명이며, OECD 국가의 평균은 1.6명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최하위인 1.17명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26년, 즉 20년후에는 전체 인구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급속한 출산율 하락에 따른 청년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의 양적·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전반에 걸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규모의 축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과다한 양육비와 탁아시설의 미비로 보여지며, 이의 타개책으로는 취학연령을 5세로 낮추어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국가가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육 및 교육을 가족 차원의 문제로 치부함으로써 개인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능력에 따라 어린이의 장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려면 저소득층의 자녀 출산과 양육문제를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제도를 전향적으로 보완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현재 의무교육은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과 저소득층 누구에게나 수평적 평등에 의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인보의 정신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국내입양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외입양 4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아로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모글스키 종목 미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동메달을 획득한 토비 도슨 선수의 친부모로 자처하는 편지와 이-메일이 100여 통이 넘는다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세계 앞에 황우석 교수사건 때와 똑같이 얼굴을 붉혀야만 했습니다. 6·25 전란의 아픔이 드리워진 해외입양은 이제 시급히 마감해야 할 과거사 청산이 아니겠습니까? 우수한 인재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것은 국부 유출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가슴으로 하는 출산이 본의원은 입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입양이 활성화 되도록 입양아의 양부모에게도 본인 출산과 똑같이 3개월의 출산휴가와 아동수당 등 모든 지원과 관심을 중앙정부뿐 아니라 이제 우리 지방정부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국가의 3요소 중의 하나인 국민, 즉 인구의 적정한 규모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합니다. 이제 국가의 백년대계인 인재양성과 출산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국가에서 더 나아가 세계의 중심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 : 11건
- 동 의 안 : 1건

【조례안 : 11건】

-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지방공사 경상북도의료원 설립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2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 1] 유치원의 『명칭 및 위치』란중 “상산초등학교상주북부분교장병설유치원, 직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유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용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용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경주시 용강동 1293

“선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구미사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원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명 칭	위 치
구미사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미시 사곡동 603-34
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산34

“거여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상주감꽃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상주감꽃유치원	상주시 만산동 673-3

“성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옥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명 칭	위 치
옥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경산시 옥곡동 827

“장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대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대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산18-1

“장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 란중 “포항시 북구 장성동 창포택지개발지구 1블럭”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44”로 하며, “금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 란중 “김천시 금산동 328”을 “김천시 삼락동 328”로 하고, “북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 란중 “칠곡군 북삼면 인평리 327 ”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327”로 “북삼초등학교오평분교장병설유치원”의 『위치』 란중 “칠곡군 북삼면 오평리 867 ”을 “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867”로, “송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 란중 “칠곡군 북삼면 보손리 266 ”을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266”로, “온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 란중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800-1 ”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804”로 한다.

[별표 2] 초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 란중 “천북초등학교북군분교장, 풍산초등학교안양분교장, 상산초등학교상주북부분교장, 금성초등학교도경분교장, 속암초등학교위중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오태초등학교”란 다음에 “구미오산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구미오산초등학교	구미시 오태동 618-1

“이동초등학교”의 『위치』란중 “포항시 남구 이동토지구획정리지구내 ”를 “포항시 남구 대잠동 470-1”로 하며, “장성초등학교”의 『위치』란중 “포항시 북구 장성동 창포택지개발지구 1블럭”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44”로 하고, “창포초등학교”의 『위치』란중 “포항시 북구 장성동 창포택지개발지구 1블럭”을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6”로 하며, “ 금릉초등학교”의 『위치』란중 “김천시 금산동 328”을 “김천시 삼락동 328”로 하고, “도봉초등학교”의 『위치』란중 “구미시 봉곡동 산17”을 “ 구미시 도량동 221”로 하며, “경산서부초등학교”의 『위치』란중 “경산시 옥산동 45 ”을 “경산시 옥산동 736-1”로 “북삼초등학교”의 『위치』란중 “칠곡군 북삼면 인평리 327 ”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327”로 “북삼초등학교오평분교장”의 『위치』란중 “칠곡군 북삼면 오평리 867 ”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867”로, “승산초등학교”의 『위치』란중 “칠곡군 북삼면 보손리 266 ”을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266”로, “인평초등학교”의 『위치』란중 “칠곡군 북삼면 인평리 산1”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656-1”로, “온정초등학교”의 『위치』란중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800-1”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804”로 한다.

[별표 3] 중학교의 『명칭 및 위치』란중 “사동중학교”란 다음에 “삼성현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삼성현중학교	경산시 백천동 591-2

“창포중학교”의 『위치』란중 “포항시 북구 장성동 창포택지개발지구 3블럭”을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7”로 하고, “이동중학교”의 『위치』란중 “포항시 남구 이동토지구획정리지구 33B 1L”를 “포항시 남구 이동 664”로 하며, “선주중학교”의 『위치』란중 “구미시 봉곡동 50”을 “구미시 봉곡동 6”로 하고, “북삼중학교”

의 『위치』란중 “칠곡군 북삼면 인평리 143 ”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43”로
 “온정중학교”의 『위치』란중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800-1”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776”로 한다.

[별표 4] 고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란중 “은척상업고등학교, 용궁상업고등
 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포항장성고등학교”란 다음에 “포항이동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포항이동고등학교	포항시 남구 이동 155

『명칭』란중 “기계종합고등학교”를 “기계고등학교”로, “상산전자공업고등학교”
 를 “상산전자고등학교”로, “경산자동차고등학교”를 “경북자동차고등학교”로, “영
 덕종합고등학교”를 “영덕고등학교”로 하고, “두호고등학교”의 『위치』란중 “포
 항시 북구 두호동 창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3B1L”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
 1106”로 하고, “선주고등학교”의 『위치』란중 “구미시 도량동 306”를 “구미시 봉
 곡동 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2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경상북도교육
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
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4조의 제목중 “공휴일 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교육감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중 “공무원증규칙”을 “「공무원증규칙」”으로 하며, 제18조제2항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하고, 제22조1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

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3조제5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하고, 제30조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며, “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공무원 휴가업무예규」”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③(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특례)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한 제23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제2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2월 24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노인전문간호센터

제70조(설치) ①만성질환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노인전문간호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노인전문간호센터는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427번지에 둔다.

제71조(소장)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노인전문간호센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전문요양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3. 요양치료·간호 및 재활서비스 실시
4. 간병전문요원 교육·양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p><신 설></p>	<p><u>제11절 노인전문간호센터</u></p> <p><u>제70조(설치) ①만성질환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노인전문간호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u>②노인전문간호센터는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427번지에 둔다.</u></p> <p><u>제71조(소장)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p> <p><u>제7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u></p> <p><u>1. 노인전문간호센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p> <p><u>2. 전문요양센터 시설의 관리운영</u></p> <p><u>3. 요양치료·간호 및 재활서비스 실시</u></p> <p><u>4. 간병전문요원 교육·양성</u></p>	<p>노인전문간호센터 신설</p>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2월 24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각호 외의 부분중 “4,050”을 “4,125”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865”를 “1,880”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2,048”을 “2,108”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 계		4,125	1,164	93	2,465	403
정 무 직		1	1			
일 반 직	소 계	1,344	959	55	76	254
	2~3급	1		1		
	3 급	7	6		1	
	4 급	64	43	7	5	9
	5 급	252	202	8	17	25
	6 급	455	327	18	27	83
	7 급	483	341	20	23	99
	8 급	82	40	1	3	38
별 정 직	소 계	37	26	5	5	1
	1급상당	1	1			
	3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4	4			
	6급상당	15	9	2	4	
	7급상당	6	5		1	
	8급상당	7	5	1		1
연 구 직	소 계	198	2		161	35
	연구관	28	1		26	1
	연구사	170	1		135	34
지 도 직	소 계	28			25	3
	지도관	7			6	1
	지도사	21			19	2
소 방 직	소 계	2,108	51		2,057	
	소방정	17	2		15	
	소방령	47	9		38	
	소방경	84	7		77	
	소방위	151	11		140	
	소방장	285	12		273	
	소방교	587	9		578	
	소방사	937	1		936	
기 능 직	소 계	365	125	33	97	110
	6 급	12	5	2	3	2
	7 급	32	18	3	5	6
	8 급	55	12	5	17	21
	9 급	118	36	4	37	41
	10 급	148	54	19	35	40
교 원	소 계	44			44	
	학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1			1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p>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4,050명</u> 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865명</u></p> <p>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2,048명</u></p> <p>3~4.(생략)</p>	<p>제2조(.....).....<u>4,125명</u></p> <p>1..... : <u>1,880명</u></p> <p>2..... : <u>2,108명</u></p> <p>3~4.(현행과 같음)</p>	<p>노인전문간호센터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증원</p>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2월 24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분야 체육청소년과 건명란 중 제2호 본문 및 가목, 나목, 바목을 삭제하고, 환경산림수산분야 환경관리과 건명에 제1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를 삭제하고, 제17호의 근거법령 중 소음진동규제법제51조, 제18호의 근거법령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54조, 제19호의 근거법령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61조를 삭제하고,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수질보전과 건명에 제5호, 제9호, 제10호를 삭제한다.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관리과	34.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 동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제16조	시장 군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별표1】

문화체육관광분야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체 육 청소년과	2.등록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에 한함)에 관한 다음 권한 가. 사업계획의 승인 나. 체육시설의 등록 및 신고·수리 바.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체 육 시 설 의 설 치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제12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35조	시 장 군수	체 육 청소년과	2.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바. 삭제		

환경산림수산분야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관리과	<p>1. <u>특정공사의 사전 신고수리</u> 2~6.(생략)</p> <p>7. <u>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다음 사항</u> (다만,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수질환경보전법령에 의한 배출사업장에서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장은 제외)</p> <p>가. <u>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수리 등</u></p> <p>나. <u>가동개시신고 수리 및 확인, 조치명령 등</u></p> <p>다. <u>개선명령 등</u></p> <p>라. <u>조업정지 명령 등</u></p> <p>마. <u>허가의 취소 등</u></p> <p>바. <u>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u></p> <p>사. <u>환경관리인 임명신고 수리</u></p> <p>8. <u>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진요청</u></p> <p>9. <u>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의 지정 고시 등</u></p> <p>11. <u>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내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u></p> <p>14. <u>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등</u></p>	<p>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p> <p>소음진동규제법 제9조</p> <p>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p> <p>소음진동규제법 제15조</p> <p>소음진동규제법 제16조</p> <p>소음진동규제법 제18조</p> <p>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p> <p>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p> <p>소음진동규제법 제27조</p> <p>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p> <p>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p> <p>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p>	시장 군수		<p><삭제></p> <p>2~6.(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 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 법령	수입 기관
환경 관리과	15. 생활소음 진동으로 인한 방음 방진시설 설치 및 사용금지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시장 군수	환경 관리과	<삭제>		시장 군수
	16. 이동소음 규제지역의 지정 고시 등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의2	시장 군수		<삭제>		시장 군수
	17.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의 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8호의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	시장 군수		17.(현행과 같음)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의 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8호의2, <삭제>	시장 군수
	18.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도 병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소음진동규제법 제54조	시장 군수		18.(현행과 같음)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삭제>	시장 군수
	19.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 제8조제9호는 도에서도 병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소음진동규제법 제61조	시장 군수		19. (현행과 같음)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삭제>	시장 군수
	(신설)				34.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동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제16조	시장 군수
					가.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수질보전과	1~4.(생략) 5. <u>간이상수도 인가 및 준공</u> 6~8.(생략) 9. <u>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명령</u> 10. <u>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명령</u> 11.(생략)	<u>수도법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u> <u>수도법 제11조 4항</u> <u>수도법제11조의2 4항</u>	시장 군수		1~4.(현행과 같음) <삭제> 6~8.(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1.(현행과 같음)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2월 24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①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

④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 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읍·면·동장”을 “읍·면·동장(구청장, 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1조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를 “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으로 하며, 제24조제1항제12호중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으로 하고, “골프장”을 “골프장·승마장”으로 한다.

제43조 본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71조중 “컨테이너를”을 “컨테이너·원자력발전”으로 한다.

제7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원자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

제74조중 “지하자원”을 “지하자원·원자력발전”으로 하고, 제81조중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를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하며, 제82조중 “1,000분의2”를 “1000분의5”로 한다.

제5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관 원자력 발전

제99조의2(납세의무자)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9조의3(과세표준 및 세율)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으로 한다.

제99조의4(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 제2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또는 명칭
2. 전력생산 및 사용현황
3.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 조합의 무상사용 확인서
4. 기타 참고사항

제101조제1항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제102조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조례 제2673호(2000.12.30)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2항중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는 제31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등) 제101조 제1항 표 제2호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p>〈신 설〉</p>	<p>제9조의2(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3인</p> <p>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p> <p>④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고액·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세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p>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p>제19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u>골프회원권</u>·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9조(납세의무자등) ①----- ----- -----<u>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u>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골프회원권 등과의 과세 형평을 위하여 승마회원권을 과세 대상에 추가</p>
<p>제24조(신고 및 납부 등)① (생략)</p> <p>1. ~ 11. (생략)</p> <p>12. <u>골프회원권</u> 및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권에 있어서는 <u>골프장</u> 및 콘도미니엄과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p> <p>13. ~ 14. (생략)</p> <p>② ~ ⑨ (생략)</p>	<p>제24조(신고 및 납부 등)① (현행과 같음)</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u> ----- -----<u>골프장·승마장</u> ----- ----- ----- ----- ----- 13. ~ 14. (현행과 같음)</p> <p>② ~ ⑨ (현행과 같음)</p>	
<p>제43조(특허권등록 등의 세율)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u>의장권</u>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제43조(특허권등록 등의 세율) ----- -----<u>디자인권</u> ----- ----- ----- ----- ----- ----- 1. · 2. (현행과 같음)</p>	<p>○납세자가 알기쉽고 의미 전달도 정확하며 현대적인 이미지에 맞게 명칭 변경</p>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p>〈신 설〉</p>	<p>제5관 원자력발전</p> <p>제99조의2(납세의무자)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제99조의3(과세표준 및 세율)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으로 한다.</p> <p>제99조의4(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 제2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전력생산 및 사용현황 3.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의 무상사용 확인서 4. 기타 참고사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01조(과세표준과 세율)① (생략)			제101조(과세표준과 세율)① (현행과 같음)			○레저세분 지방 교육세 세율 개정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1	(생략)	(생략)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생략)	100분의60	2	(현행과 같음)	100분의40	
3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생략)	(생략)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생략)	(생략)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생략)	(생략)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2조(신고 및 납부)① (생략)			제102조(신고 및 납부)① (현행과 같음)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정비
②시장·군수가 납세의무자 에게 주민세균등할·자동차 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 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②----- ----- ----- <u>재산세</u> ----- ----- -----			
조례 제2673호(2000.12.30)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조례 제2673호(2000.12.30)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교육재정 부족 문제를 위하여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 세 적용 시한 연장
제2조(적용시한 등) ②제101 조제1항 표 제6호의 개정규 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적용시한 등)②----- ----- -----2010년 12월 31일까지 -----.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2월 24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중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를 “건축하는”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 “날부터”를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중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동조제1항제3호중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제1항에서”를 “제1항 및 제2항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동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에서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p>제3조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p> <p>2.~4.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을 하는</p>	<p>제3조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p> <p>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p> <p>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p> <p>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p> <p>2.~4.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 ----- ----- ----- ----- -----</p>	<p>○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을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이 취득하는 경우 면제혜택 부여</p>

현행	개정	개정이유
<p>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p>	<p>○ 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0호 이상이 되는 경우 그 20호로부터 초과분 면제</p>
<p>《신설》</p>	<p>②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한다.</p> <p>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p>	<p>○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여하는 경우도 최초 분양으로 보아 면제</p> <p>○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내 매입 임대사업자면제 제외</p>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2월 24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도지사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 · 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 · 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도지사는 상 · 하수도 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 외에 따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통 · 리장(이하 “주민대표자”라 한다)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 · 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제14조(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도지사는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도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제13조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자는 감독 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 · 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및 여비 :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2. 기술검토수당 : 1건당 20,000원
3.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 1일 2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2월 24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립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경상북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315번지
2.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85번지
3.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 경상북도 안동시 북문동 470번지

제3조(임원) ①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1. 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경상북도 공공의료정책담당과장(보건위생과장)
3.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중에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1인

4.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5.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6.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7. 경상북도 예산담당과장
8.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인
9. 기타 원장이 추천하는 자

②원장과 의료원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이사회) 이사회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원장)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제6조(인사교류) 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①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과태료)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포항의료원은 이를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으로, 지방공사김천의료원은 이를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으로, 지방공사안동의료원은 이를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포항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 지방공사김천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이, 지방공사안동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이 승계한다.

제3조(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포항의료원, 지방공사김천의료원 및 지방공사안동의료원의 정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지방공사포항의료원, 지방공사김천의료원 및 지방공사안동의료원은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사경상북도 의료원설립조례」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사포항의료원, 지방공사김천의료원 및 지방공사안동의료원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립조례」 및 지방공사포항의료원, 지방공사김천의료원 및 지방공사안동의료원 정관에 따라 임

명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장 또는 원장”을 “사장”으로 한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8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p>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p> <p>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 때</p> <p>나.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한 때</p>	<p>법 제29조 제1항 제1호</p>	<p>300만원</p> <p>150만원</p>
<p>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가.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p> <p>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때</p> <p>다. 검사원의 검사장 또는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때</p> <p>라.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 하지 아니한 때</p> <p>마. 지정된 검사기일에 수검원이 출석하지 아니 한 때</p>	<p>법 제29조 제1항 제2호</p>	<p>300만원</p> <p>150만원</p> <p>100만원</p> <p>50만원</p> <p>50만원</p>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2월 24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중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하며,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한다.

제7조중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를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u></p> <p>제 1 조 (목적)-----<u>공직자윤리법</u> ----- -----</p> <p>2 조 (구성 및 선임방법)</p> <p>① (생 략)</p> <p>1. ----- <u>(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u>----- -----</p> <p>2. (생 략)</p> <p>② (생 략)</p> <p>제 5 조 (위원회의 회의등)</p> <p>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u>재적위원 3분의 2이상</u>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u>법 제8조제6항</u>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u>법 제8조제11항</u>의 규정에 의 한 조사의뢰의 승인</p> <p>2. ~ 3 (생 략)</p> <p>4. <u>법 제23조</u> 내지 <u>법 제29조</u>에 해 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p>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u></p> <p>제 1 조 (목적) ----- <u>「공직자윤리법」</u> ----- -----</p> <p>제 2 조 (구성 및 선임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1. ----- <u>(「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u>----- -----</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5 조 (위원회의 회의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다만, 다 음 각호의 사항은 <u>출석위원 3분의 2이</u> <u>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1. <u>법 제8조제7항</u>----- -----<u>법 제8조제12항</u>----- -----</p> <p>2. ~ 3 (현행과 같음)</p> <p>4. <u>법 제24조</u> 내지 <u>법 제29조</u>에 해 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p>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2월 24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5,472명(한시정원 10명 포함)”을 “5,566명”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5,458명(한시정원 10명 포함)”을 “5,55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 제35조와 <u>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u>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감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5,472명(한시정원 10명 포함)</u>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 <u>5,458명(한시정원 10명 포함)</u> <p>제3조 (생략)</p>	<p><u>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u></p> <p>제1조(목적)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 -----.</p> <p>제2조(정원의 총수)----- ----- <u>5,566명</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u>5,552명</u> <p>제3조 (현행과 같음)</p>

【동의안 : 1건】

-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건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2월 24일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건

대구·경북의 지역 주요 전략산업인 한방산업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수립과 관련 사업 지원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 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

□ 의결사항

- 법인 명 칭 :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 법인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대구시 약령시에 분원 설치)
- 설립자본금 : 50백만원(경북 25, 대구 25)
- 임 원 : 12명(이사 10, 감사 2)
- 법인의 사업
 -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 한약재 품질인증사업
 - 한약재 생산·가공·유통 선진화 사업
 - 한방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 한방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지원 사업
- 한방산업의 과학화·정보화 및 인력양성 사업
-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
- 한방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사업 등

의정활동보고서(제202회 임시회)

2005. 11 인쇄 / 2005. 1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